

(사업방법서 별지)

1. 보험종목의 명칭

무배당 알리안츠자녀사랑드림플랜보험

2. 보험의 구성

구분	보험종류
주계약	무배당 알리안츠자녀사랑드림플랜보험
특약	무배당 알리안츠자녀사랑드림플랜보험 유자녀학자금보장특약
	무배당 알리안츠자녀사랑드림플랜보험 보험료납입면제특약

3. 보험의 세목 및 보험기간, 납입기간, 납입주기

구분	보험의 세목	보험기간	납입기간	납입주기
주계약	적립형	27세만기	10년납, 15년납, 전기납	월납
	거치형		일시납	일시납
유자녀학자금 보장특약	적립형	22세만기	10년납, 15년납	월납
	거치형		일시납	일시납
보험료납입 면제특약	적립형	주계약 납입기간	전기납	월납

4. 가입나이

구분	보험세목	가입나이									
주계약	적립형	0세~10세									
	거치형	0세~14세									
보험료납입면제 특약	적립형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 : 0세~10세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 : 20세~60세									
유자녀학자금보 장특약	적립형	<table border="1"> <thead> <tr> <th>납입기간별 가입나이</th> <th>10년납</th> <th>15년납</th> </tr> </thead> <tbody> <tr> <td>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td> <td>0세~10세</td> <td>0세~6세</td> </tr> <tr> <td>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td> <td colspan="2">20세~60세</td> </tr> </tbody> </table>	납입기간별 가입나이	10년납	15년납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	0세~10세	0세~6세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	20세~60세	
		납입기간별 가입나이	10년납	15년납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	0세~10세	0세~6세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	20세~60세										
※다만, 15년납의 경우 주피보험자의 나이가 6세인 경우에는 종피보험자의 가입나이는 32세~58세로 제한. ※다만, 주피보험자 0세~6세이고, 종피보험자가 남자이며 종피보험자와 주피보험자의 연령차이가 52세~60세인 경우에는 가입제한.											
거치형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 : 0세~14세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 : 20세~60세 ※다만, 주피보험자가 0세~3세이고, 종피보험자가 남자이며 57세~60세인 경우 가입제한.										

5. 보험료의 구성 및 납입 한도

가. 기본보험료(1구좌 기준)

- (1) 적립형: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약정한 보험료
- (2) 거치형: 보험계약 체결시 납입하는 일시납보험료

나. 보험료 납입한도

(1) 적립형

납입기간	가입나이	보험료
10년납	0세	6만원 ~ 200만원
	1~2세	7만원 ~ 200만원
	3~4세	8만원 ~ 200만원
	5세	9만원 ~ 200만원
	6~7세	10만원 ~ 200만원
	8세	11만원 ~ 200만원
	9세	13만원 ~ 200만원
	10세	16만원 ~ 200만원
15년납	0~4세	6만원 ~ 200만원
	5~6세	7만원 ~ 200만원
	7세	8만원 ~ 200만원
	8세	9만원 ~ 200만원
	9세	11만원 ~ 200만원
	10세	14만원 ~ 200만원
전기납	0~5세	6만원 ~ 200만원
	6~7세	7만원 ~ 200만원
	8세	9만원 ~ 200만원
	9세	11만원 ~ 200만원
	10세	15만원 ~ 200만원

(2) 거치형

일시납보험료 1,000만원 ~ 2억원

다. 추가납입보험료

(1) 적립형

- (가) 기본보험료 외에 보험계약일 이후 1개월 경과 후부터 보험기간 종료일의 3년 전 계약해당일 이전까지 보험료 납입한도에 따라 수시로 납입할 수 있

는 보험료를 말한다.

- (나)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는 납입기간 동안 납입하기로 약정한 기본보험료 총액의 200% 이내에서 시중금리 등 금융환경에 따라 회사가 매년 정하는 한도로 하며, 1회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는 경과 기간별로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매회 10만원 이상)

1회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 한도

$$= \text{기본보험료의 } 200\% \times \text{가입경과월수} \\ - \text{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

- (다) ‘(나)’ 에서 가입경과월수는 가입시를 1개월로 하고, 이후 계약일 기준으로 매1개월 경과시마다 1개월씩 증가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보험료 납입기간을 최고한도로 한다.
- (라) ‘(나)’ 에서 시중금리에 따라 납입한도를 축소하는 경우는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의 직전 3개월 월평균 이율이 이 계약의 최저보증이율(연복리 1.5%) 이하로 하락하여 3개월 이상 계속 하회하는 경우에 한한다.
- (마) 납입한도를 별도로 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나)’ 의 한도를 적용한다.

(2) 거치형

- (가) 기본보험료(일시납보험료) 외에 보험계약일 이후 1개월 경과 후부터 보험기간 종료일의 3년 전 계약해당일 이전까지 보험료 납입한도에 따라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한다.
- (나)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는 기본보험료(일시납보험료)의 200%이내이며, 연간(보험년도 기준) 납입한도는 기본보험료(일시납보험료)의 20% 이내에서 시중금리 등 금융환경에 따라 매년 회사에서 정하는 한도내에서 납입할 수 있다.
- (다) ‘(나)’ 에서 시중금리에 따라 납입한도를 축소하는 경우는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의 직전 3개월 월평균 이율이 이 계약의 최저보증이율(연복리 1.5%) 이하로 하락하여 3개월 이상 계속 하회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납입한도를 별도로 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나)’ 의 한도를 적용한다.

6. 배당에 관한 사항 : 배당금이 없음

7. 계약자 적립금의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 가. 계약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가 21세가 되는 시점부터 만기시점 전까지 보험연도 기준 연4회에 한하여 계약자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다.
- 나. 1회에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은 10만원 이상 만원단위로 하며, 인출할 당시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의 50%를 최고 한도로 한다.
- 다. ‘가’ 에도 불구하고 추가납입보험료 적립금이 있을 경우에 계약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21세가 되기 전에도 보험연도 기준 연4회에 한하여 추가납입보험료 적립금의 한도내에서 인출할 수 있다.
- 라. ‘나’ 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적립금이 향후 위험보험료 등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더 이상 인출할 수 없으며,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의 총 인출금액은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기본보험료(단,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제외) 및 추가보험료의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 마. 계약자적립금의 중도인출은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에서 우선적으로 인출하며,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에서 인출한다.

8.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 가. 이 계약의 계약자적립금에 대한 적립이율은 공시이율로 한다.
- 나. 이 계약의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한다.
- 다. 회사는 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지출률을 차감한 내부지표와 객관적인 시장금리를 반영한 외부지표를 산술평균하여 산출한 공시기준이율에 향후 예상수익률 등

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공시이율을 결정하며, 공시이율은 산출공시기준이율의 80% ~ 120% 범위내에서 정한다.

$$\text{공시기준이율 산출식} = \frac{\text{내부지표} + \text{외부지표}}{2}$$

A. 내부지표

$$\text{내부지표 산출식} = \frac{2 \times (I - E)}{A_{12} + A_0 - (I - E)}$$

- (주) ■ I : 직전 12개월간 투자수익
 ■ E : 직전 12개월간 투자비용
 ■ A_{12} : 산출시점 직전 12개월초 현재 운용자산
 ■ A_0 : 산출시점 직전 월말 현재 운용자산

B. 외부지표

$$\text{외부지표 산출식} = B1 \times r + B2 \times (1 - r)$$

- (주) ■ B1 : 국고채 수익률의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다만, 국고채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국고채권(3년만기)의 시가평가기준 수익률(YTM)로 한다.
 ■ B2 : 회사채 수익률의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다만, 회사채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무보증 AA-(3년만기) 시가평가기준 수익률(YTM)로 한다.
 ■ r : 산출시점 전월말 기준 당사 보유 채권의 장부가액 중 국고채권의 비율로 하며, 5% 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 가중이동평균이율 (B_i) = $\frac{B_i(-3) \times 1 + B_i(-2) \times 2 + B_i(-1) \times 3}{6}$
 - $B_i(-3)$: 산출시점에서 직전 3월의 월평균 수익률
 - $B_i(-2)$: 산출시점에서 직전 2월의 월평균 수익률
 - $B_i(-1)$: 산출시점에서 직전 1월의 월평균 수익률

라. ‘다’의 공시이율은 동종상품[‘다’에 따라 공시이율이 운용되는 상품]의 배당보험 공시이율보다 높게 적용한다.

마. 회사는 계약자에게 연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용을 통지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상품공시실)에 공시이율과 공시이율의 산출방법에 대하여 공시한다.

바.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1.5%로 한다.

사. 세부적인 공시이율의 운용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공시이율운용지침」에 따른다.

9. 기타

가. 이 보험의 가입 시 무배당 알리안츠자녀사랑드림플랜 보험료납입면제특약을 의무부가 한다.(적립형에 한함)

나.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1) 고액보험료 할인(적립형에 한함)

주계약 기본보험료가 50만원 초과인 계약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주계약 기본보험료를 할인한다.

할인조건	할인금액
기본보험료 50만원 초과 ~ 100만원 이하	기본보험료 50만원 초과금액의 1.0%
기본보험료 100만원 초과	기본보험료 100만원 초과금액의 1.5% + 5,000원

(2) 다자녀 가구 할인

(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형제자매가 본인포함 3인인 경우 : 주계약 기본보험료의 0.5%를 할인한다.

(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형제자매가 본인포함 4인 이상인 경우 : 주계약 기본보험료의 1.0%를 할인한다.

(다) 다자녀 가구 할인을 받고자 할 경우, 계약자는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 또는 기타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연체이자율

연체보험료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연체기간에 대하여 공시이율을 적용한다. 공시이율이 연체기간 중 변경될 때에는 월가중 평균한 이율로 한다.

라. 선납보험료

- (1) 선납보험료는 매년 당월분을 포함하여 12개월분 이하의 보험료를 선납할 때에 한하며, 선납보험료는 월납보험료의 배수로 납입하여야 한다.
- (2) 선납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일로부터 공시이율로 부리 적립하며, 당해보험료는 납입해당일에 대체한다.

마. 보험계약대출이율

이 보험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은 「공시이율 + 1.5%」로 하고, 보험계약대출이율이 변경될 때에는 월가중평균한 이율로 한다.

바. 이 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1) 적립형 : 기본보험료 × 12 × MIN [납입기간, 10]
- (2) 거치형 : 일시납보험료

사. 보험료납입면제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은 주계약 및 특약(다만, 갱신부 특약은 제외)의 월납보험료의 합계로 한다.

아. 회사는 상품명칭 앞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할 수 있다.

자. 장기납입보너스 적립에 관한 사항

주계약 기본보험료를 60회 완납한 계약에 한하여 주계약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 납입시(선납시 해당 납입회차 계약해당일) 실제 납입한 납입회차를 기준으로 아래 장기납입보너스 해당금액을 계약자적립금에 가산하여 적립한다.

구 분	적립금액
61회차 이상 120회차 이내	매월 기본보험료의 0.5%를 적립
121회차 이상	매월 기본보험료의 0.7%를 적립

차. 보험기간, 납입주기, 납입기간의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관련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카. 만기시점 계약자적립금의 최저 보증에 관한 사항(적립형에 한함)

(1) 만기시점의 계약자 적립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최저한도로 한다.

(2) ‘(1)’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라 함은 매월 납입하기로 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특약보험료 제외)를 말한다. 다만, 계약자가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거나 계약자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한 경우 또는 초등학교 입학자금, 중학교 입학자금, 고등학교 입학자금, 대학교 입학자금 및 어학연수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와, 계약자적립금의 중도인출, 기본보험료 감액 또는 입학자금 및 어학연수자금 지급 이후 납입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한다.

▪ 인출 직후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 \text{인출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 \\ \times \frac{\text{인출 직전 계약자적립금} - \text{인출금액}}{\text{인출 직전 계약자적립금}}$$

▪ 감액 직후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 \text{감액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 \times \frac{\text{감액 직후 계약자적립금}}{\text{감액 직전 계약자적립금}}$$

▪ 입학자금 및 어학연수자금 지급 직후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 \text{입학자금 및 어학연수자금 지급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 \\ \times \frac{(\text{입학자금 및 어학연수자금 지급 직전 계약자적립금} \\ - \text{입학자금 및 어학연수자금 지급 금액})}{\text{입학자금 및 어학연수자금 지급 직전 계약자적립금}}$$

(3) ‘(2)’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산하는 경우의 ‘인출, 감액, 입학자금 또는 어학연수자금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란 해당 인출, 감액, 입학자금 또는 어학연수자금이 발생하기 전에 인출, 감액, 입학자금 또는 어학연수자금이 발생한 경우 ‘(2)’에 따라 계산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한다.